

# 예산총칙

202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75,148,332	14,254,450
일반회계	409,760,919	12,292,828
특별회계	65,387,413	1,961,622
공기업특별회계	38,701,569	1,161,04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44,654	607,34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8,456,915	553,707
기타특별회계	26,685,844	800,57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69,231	59,077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807,642	114,229
주차장특별회계	1,680,527	50,416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19,228,444	576,85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 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0,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 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 (1) 기준인건비
- (2) 재무활동 경비
- (3)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